

● 복지용구 구입·대여품목 사용 가능 횟수 및 급여 한도

품 목					사용 가능 횟수	급여한도
구입 품목	1		이동변기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5년	1개
	2		목욕의자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5년	1개
	3		성인용 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5년	2개
	4		안전 손잡이	손잡이를 설치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없음	10개
	5		미끄럼 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액)	없음	6개(양말) 5개(매트,액)
	6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없음	2개
	7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2년	1개
	8		욕창예방 방석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년	1개
	9		자세변환 용구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없음	5개
	10		요실금 팬티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증상이 있는 수급자에게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용품	없음	4개
대여 품목	11		수동 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5년	1개
	12		전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10년	1개
	13		수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10년	1개
	14		이동욕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5년	1개
	15		목욕 리프트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3년	1개
	16		배회 감지기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	5년	1개
구입 또는 대여 품목	17		욕창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년	1개
	18		경사로 (실내용) 경사로 (실외용)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하는 용품	2년 (실내용) 8년 (실외용)	6개 1개

※ 목욕리프트는 현재 급여 중인 제품이 없습니다.

※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 가능 횟수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 2개, 경사로(실내용) 6개까지 구입 가능)

※ 사용 가능 횟수가 없는 품목의 급여 한도는 '연 한도액 적용기간(1년)' 내 기준 적용

복지용구 불편 상담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일반민원상담 창구(VOC)로 통합하여 운영(23년 12월부터) 하고자 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중 제품 결함 등에 의한 안전사고, 기타 불편사항 문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민원상담 → 일반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가능하오니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